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4.20.(화)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1년 4월20일  
전문위원 배 금 택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34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년 4월 6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4월 8일

### 2.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함(안 제6조 ~ 제12조)
- 마.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 조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바. 토지 등의 출입증 및 발급 대장(안 제16조 및 별지 제1, 2호 서식)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제26조, 제54조, 제74조, 제7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1. 3. 3. ~ 3. 23.) 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

-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2021. 6. 9. 시행)되고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 개정내용

-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2021. 6. 9. 시행)되고 행정안전부 「주소정보<sup>1)</sup>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2021. 2.21.)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함
  - (변경 전)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변경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1) 주소정보 :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

○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2021. 2.21.)에 따라 도로명주소, 기초번호<sup>2)</sup>, 국가기초구역<sup>3)</sup>, 국가 지점번호<sup>4)</sup>, 사물주소<sup>5)</sup> 등 주소정보를 확대하여 사용하기 위한 내용들을 규정함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광고비용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도로명주소법」(2021. 6. 9. 시행)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제54조제6항에 따라 건물번호 및 사물주소 부여 또는 변경시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제작비용 산정 기준일과 비용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
-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2021. 6. 9. 시행) 제25조제4항<sup>6)</sup>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 게재 및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2) 기초번호: 도로구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고, 시작지점으로부터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하여 진행할수록 번호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 가상의 간격

3) 국가기초구역: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 단위로 공동 활용하고자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구획한 제도. **우편번호**로 사용됨

4) 국가지점번호: 건물이 없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등에 지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산림·해양 등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한글 2글자와 숫자 8글자로 표기

5) 사물주소: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

6) 도로명주소법(2021. 6. 9. 시행)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조 ~ 제12조)

- 「도로명주소법」(2021. 6. 9. 시행) 전면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변경 전)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변경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정보위원회
- 안 제6조의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7)이 강행규정임에 따라 이를 반영한 문구이며,
- 안 제7조제2항 위원의 해촉사유<sup>8)</sup>에서는 제2호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음

○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 조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구청장은 주소정보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 특히, 구청장은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

7)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8) 위원 해촉 사유 (안 제7조제2항 관련)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안 제15조)

-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2021. 6. 9. 시행) 제33조제2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도로명판 설치 등 안 제15조 각 호<sup>9)</sup>에 열거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 토지 등의 출입증 및 발급 대장(안 제16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제75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 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등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때 필요한 증표(별지 제1호) 및 그 기록 관리를 위한 발급대장의 서식(별지 제2호)을 규정함

##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2021. 6. 9. 시행)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9) 제15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이하생략-

- 특히, 기존에 건물이 아닌 버스·택시 정류장, 옥외 승강기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은 인근 지역의 주소 또는 건물명칭을 임의로 사용해 왔으나 금번 개정안의 주소정보 사용확대 조항에 따라 각각의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표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실제 위치와 지도상의 위치가 상이함에 따른 이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으며,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및 고시를 통해 일관되지 않은 제작비용 산정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였음
- 또한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2021.2.21.)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는 등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sup>10)</sup>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사안으로 이는 확정되지 않은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중 시행령 인용 조항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16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이하생략-

# 참고1 관련 자료

##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일부 발췌(행정안전부, 2020.12)

### 1. 도시구조 변화 대응 및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


#### ① 입체 공간에 주소부여(제2조제1호)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원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면 도로에만 도로명 부여</li> </ul> </li> <li>※ 고가, 지하 도로 위에 신축되는 건물, 강남역 등 지하상가 내부 상점에는 개별주소 부여가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의 정의 확대를 통한 입체적 주소부여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지하 차도 및 건물 내부 통로 등에도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li> </ul> </li> </ul>

#### ② 공유수면매립지 등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주소부여(제16조)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새만금)은 주소를 부여할 주체*가 없어 주소사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 부여권자는 시·군·구청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 입주민이나 기업에게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도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 행정안전부장관</li> <li>② 시·군·구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 시·도지사</li> </ul> </li> </ul> </li> </ul>

#### ③ 사물주소 부여를 통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지원(제24조)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 시설물*은 정확한 위치표기 방법이 없어 인근 지역의 주소 또는 건물명칭을 임의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교 승강기, 대피소, 정류장, 주차장 등</li> <li>- 실제 시설물 위치와 지도 상의 위치가 서로 달라 안전사고 시 출동 지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명주소 기반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위치 확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예: 옥외 승강기 위치 오류 사례&gt;</li> </ul> </li> </ul> 

### 2.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 ① 도로명·건물번호 변경 시 주소변경 내용을 공공기관에 통보하면,

통보받은 기관이 공부의 주소를 직접 정정 처리(제7조제5항 등)

※ (현행) 국민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주소정정 신청



② 임대건물 상세주소 사용 확대를 위한 신청인 범위 확대(제14조)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자)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직접 신청권 없음)</li> <li>▪ (임차인)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에 동의한 경우 신청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자)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직접 신청권 부여</li> <li>▪ (임차인) 현행 유지</li> </ul>

3. 도로명 부여 신청 등 국민 참여권 확대

① 주소를 사용하려는 국민에게 도로명 등의 직접 신청권 부여 (제7조제2항, 제24조제1항)

② 既 건축된 건물과 인공·자연적 구조물의 주소부여 절차 마련(제11조제1항)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건물의 경우에만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 구조물* 등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도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 마련</li> </ul> <p>* 비닐하우스, 산속 자연동굴형 암자, 창고·축사·폐가 등</p>

4. 제도 실효성이 적거나, 사문화된 조문 등의 정비

【해당 조문】	【내 용】
제4조제2항	국가 등은 도로명주소 등의 사용을 위한 예산을 계상해야 함
제7조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
제20조의2제3호	도로명주소 신청의 대위(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5. 복잡한 조문 순서의 정비, 유사 조문은 통합, 어려운 용어의 정리

구분	【현 행】	【개 정】
조문 정비	36개 조문(가지번호 10개 포함)	35개 조문
유사 조문 통합	제5조(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확정)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제8조의7(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제15조(도로시설물의 사용)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 변경 등)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 □ 도로명주소법[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전부개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 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이전설치·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건물등의 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변경과 폐지의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군·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

의 부여·변경·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확인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옥외 대피 시설
3. 버스 및 택시 정류장
4. 주차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소정

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⑧ 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⑩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주소정보의 관리·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시·도에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제26조(건물번호판의 신청 및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훼손되거나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하거나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하거나 고지한 날
2.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을 고지받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물주소판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사물주소판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

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물주소판의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신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위임·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1. 도로명(도로구간의 설정 및 기초번호의 부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
2.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3. 고지에 관한 사항(제32조제4항에 따른 고지는 제외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6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6.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③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6.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는 업무

④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설립을 인가한 비영리 법인

**제75조(토지 등의 출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국가지점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및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건물등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건물등·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증표로 대신 사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